



信州大学と慶尚大学校の図書館 交流 協定書



日本国信州大学附属図書館と大韓民国慶尚大学校図書館は、相互の図書館交流を推進するために、この協定を締結する。

(目的)

第1条 大学図書館における両者の交流を促進し、相互理解を深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。

(連携事項)

第2条 次に掲げる事項について連携し、協力するものとする。

- (1) 図書館の利用
- (2) 学術資料の交換
- (3) 情報の提供
- (4) 図書館職員の交流

(実施)

第3条 連携事項の実施に関して、協定締結後に両者が協議・実施するものとする。

(施行及び期限)

第4条 本協定は、両者の代表の署名した日に効力を発し、いずれか一方が協定の終了を通知しない限り、引き続き効力を有するものとする。

(細目)

第5条 この協定に定める事項について疑義が生じたとき、又はこの協定に定めのない事項につ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、両者が協議して定めるものとする。

この協定の締結を証するため、日本語及び韓国語で作成し、両文書は等しく正文とし、両協定書に署名のうえ、各自その1通を保有するものとする。

2011年 5月 17日

信州大学附属図書館長
笹本正治

慶尚大学校図書館長
黄義洸

笹本正治

黃義洸
11.5.17



慶尙大學校와 信州大學의 圖書館 交流 協定書



대한민국 慶尙大學校 圖書館과 일본국 信州大學 附屬圖書館은 상호 도서관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 협정을 체결한다.

(목적)

제1조 대학도서관에 있어서 양측의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 이해를 깊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(제휴사항)

제2조 다음에 명시한 사항에 관하여 제휴·협력한다.

- (1) 도서관의 이용
- (2) 학술자료의 교환
- (3) 정보의 제공
- (4) 도서관 직원의 교류

(시행)

제3조 제휴사항의 시행에 관해서 협정 체결 후 양측이 협의하여 시행한다.

(시행 및 기한)

제4조 본 협정은 양측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협정의 종료를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효력을 갖는다.

(세부사항)

제5조 본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이의가 발생했을 경우, 또는 이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양측이 협의하여 정한다.

이 협정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어 및 일본어로 두 별의 협정서를 작성하여 서명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.

2011년 5월 17일

慶尙大學校圖書館長
黃 義 洌

信州大學附屬圖書館長
笹 本 正 治

2011.5.17